

경운대학교 복수전공이수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51조에 의거하여 복수전공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전공이라 함은 입학당시 모집단위(과, 학부) 내에서 학생의 수강신청에 의한 제1차적인 전공을 말한다.
2. 복수전공(제2, 3전공)이라 함은 제1전공을 제외한 전공 중에서 순차적으로 이수한 전공을 말한다.

제3조(인원배정) 복수전공의 인원배정은 모집 전공정원의 100%를 초과할 수 있다.

제4조(복수전공의 범위) ① 경운대학교 전 학부(과)내의 전공을 제2, 3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 ② 제2, 3전공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 및 변경,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공의 특성에 따라 학부(과)내규로 제한할 수 있다.
- ③ 보건·간호 계열은 인원 및 학습제에 따라 복수전공을 제한한다.

제5조(교양과목) ① 각 학부(과)에서 제시한 핵심교양, 배분교양, 심화교양으로 구분된다.

- ② 제1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해당학부(과)의 핵심교양, 배분교양, 심화교양의 최소이수 학점을 포함한 44학점을 이수 하여야 한다.
- ③ <삭제>

제6조(전공기초과목) ① 제1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1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② <삭제>
- ③ 제2, 3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학부(과)의 전공기초과목을 6학점 이상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제6조의1(통섭전공) ① 제1전공 학부(과)의 통섭전공 과정은 계열별 최소 이수 학점 4~12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제7조(전공과목) ① 제1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계열별 전공(전공핵심·전공심화) 31~45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② 제2, 3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학부(과)의 전공기초, 전공(전공핵심·전공심화) 과목 중 42학점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 ③ 한 학부 내에서 제2전공을 이수하기 위한 학부 공통 과목의 중복인정은 21학점까지 인정한다.

제8조(이수절차) ① 재학 중 제1전공 이외에 다른 전공과정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수한 자에게는 이를 복수전공으로 인정하고 각각의 학사학위를 별도로 수여한다.

- ② 모든 학생은 제1전공을 반드시 모집단위(과, 학부) 내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제2학년 1학기부터 복수전공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 ③ 복수전공을 이수중인 자는 졸업예정학기말 소정의 기간을 이용하여 복수전공학위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복수전공 학위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복수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 ⑤ 편입학생이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편입학생의 취득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학점 이외에 편입학한 학과 전공과목을 40학점 이상과 복수전공 대상 학과의 교양필수 지정과목과 전공기초과목 10학점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하며, 경운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100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단, 2학년 편입생의 경우 편입학한 이후 편입학한 학과에 개설된 교양과목과 전공기초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 하며, 경운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135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 ⑥ 복수전공 학위를 위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더라도 제1전공 및 복수전공 전체에 대한 성적 평균이 평점 2.5이상이 되지 아니할 경우 복수전공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9조(수강신청 우선순위) ① 각 교과목은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수강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복수전공자 수강신청의 우선순위는 수강신청 직전학기의 성적에 의하되, 동점자의 경우 연소자 순으로 한다.

② 우선순위는 1차에 한하며, 2차 수강신청부터는 전산입력 순으로 한다.

제10조(수업연한과 재학연한) 복수전공 이수자의 수업연한 및 재학 연한은 없다.

제11조(졸업) ① 제1전공은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② 제3전공은 제2전공의 모든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③ 제1전공 이수 후 졸업학점을 초과하여 제2, 3전공을 계속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졸업학점을 완료한 학기에 졸업연기일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 3전공을 이수중인 자에게는 제1전공의 학위수여를 유보하였다가 제2, 3전공을 완료한 학년도에 복수전공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④ 한 학부 내에서의 복수전공 이수는 2개 전공만 인정한다.

제12조(학칙의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운대학교 학칙 및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012~2016학년도 입학자의 경우 교양과목은 기초교양, 핵심교양으로 구분되며 제1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해당학부(과)의 기초교양, 핵심교양, 일반교양의 최소 이수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2012~2014년 입학자 기초교양 12학점, 핵심교양 8학점, 일반교양 10학점 이수하여야 한다.
2015년 입학자는 핵심교양 12학점, 기초교양 8학점, 일반교양 10학점 이수하여야 한다.
2016년 입학자는 핵심교양 20학점, 기초교양 12학점, 일반교양 8학점 이수하여야 한다.)
3. 2012~2016학년도 입학자의 경우 제1전공을 이수하기 위해 전공기초 15학점이상, 전공과목 40학점(2011학번 이전 35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제 2, 3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전공기초 10학점 이상, 전공과목 4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